



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남원용성중학교

## 가정통신문

우) 55737  
남원시 춘향로 73번지  
(<http://www.nwys.ms.kr>)  
교무실 : (063) 633-4549  
팩 스 : (063) 631-4734

### 2024학년도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수 부여 안내

#### ※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비율 부여 방법

##### 1. 100%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(일 단위로 적용)

- 1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- 2)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
- 3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“학교·시도(교육청)·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, 산업체실습과정(현장실습,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), 교환학습, 「학교보건법」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”으로 인한 결석
- 4)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
- 5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,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
- 6)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신고서 제출시 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
- 7)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의 결석
- 8)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

##### 2. 80%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

- 1) 질병으로 인한 결석(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)
- 2)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(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)

##### 3. 70%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

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은 70%의 인정점을 부여한다.

※ 고사기간 및 이의신청기간, 영어듣기평가 실시일 중 교외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
##### 4.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

- 1) 미인정결석
- 2)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
- 3)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